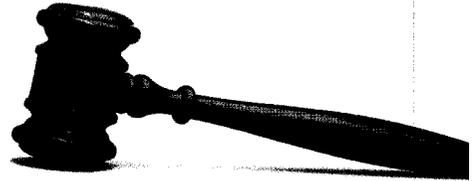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인권침해

::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에이즈는 질병 자체보다는 질병으로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두려운 존재다. 게다가 정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제정하여 감염인·환자의 신고·검진·관리 등을 법제화 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방법 중 어떤 조항이 감염인·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들

의사·의료기관은 신고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방법 제5조, 제6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에이즈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감염자 및 그 동거인, 가족에게 에이즈의 예방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자가 입원, 퇴원, 사망하여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역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술연구 및 혈액과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에이즈 감염자를 발견한 자 또는 그 기관장에게도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에이즈 감염자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계층은 검진의무가 있다.(제8조, 제27조)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의 종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에이즈에 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일 검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는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리고 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에이즈감염자를 보호·관리한다.(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가는 에이즈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전문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에이즈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를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에이즈 감염자가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자는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

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업소경영자도 에이즈 감염자 및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인권침해논란으로 법제정 안된 국가도 존재

88서울올림픽 직전인 1987년 말에 제정된 처음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강제격리, 강제치료, 취업제한과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수 포함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 인권침해로 지적된 내용이 많이 제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결국 아직까지도 에이즈예방법을 제정하지 못한 외국의 예를 생각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여전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인권침해 조항의 문제점

현대의 민주헌법 아래에서는 환자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에이즈 감염자라고 하여 천부의 인간존엄이 부인될 이유는 없다. 에이즈 감염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근본적으로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에게는 사생활상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각별히 요구된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사의 신고의무나 보고의무 혹은 행정기관에 의한 감염자명부의 작성, 비치와 같은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직업·주소)을 비롯한 사생활이 공개·폭로되고, 그 결과로 에이즈 감염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감염자 혹은 감염의심자, 감염위험자에 대한 역학조사의 과정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역시 업소종사자나 일정한 집단, 즉 감염의심계층이나 위험계층, 노출계층에 대한 강제적 에이즈검진은 의료적 침습(검진

도 역시 의료적 침습에 해당한다)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에 기한 자기결정으로서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는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에이즈음성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만일 제시를 못하면 강제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에이즈음성확인서의 제출의무나 강제검진을 규율하는 규정도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규정으로서 지적될 수 있다.

다행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강제격리에 관한 규정은 이미 폐지되어 있으나, 아직도 에이즈 감염자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수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치료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자에 대

한 강제치료 혹은 감염자의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강제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에이즈환자의 개인적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감염자 혹은 에이즈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일정한 업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취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에이즈로부터의 국민보호는 감염자의 일상 보장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다만 에이즈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라고 하는 과제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를 통해서서는 달성할 수 없다. 물론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적·사회정책적 조치가 당연히 요구된다.

그러나 에이즈로부터의 국민건강의 보호는 근본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가 공포와 불안을 불식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